

「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 명시,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조항 정비, 아동권리전담조직 및 실무추진단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와 일반원칙 구체적 명시(안 제2조, 제7조)
 - 생존권, 발달권, 보호권, 참여권
 - 비차별, 생명·생존 및 발달의 권리, 아동 의견 존중, 아동 최선의 이익
- 아동권리전담조직 및 실무추진단 설치 조항 신설(안 제13조2, 제13조3)
- 종전의 ‘할 수 있다’, ‘노력하여야 한다’를 의무규정(“해야 한다”)으로 개정(안 제3조, 제4조, 제12조, 제14조, 제23조, 제3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이행을 위한
주요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
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미의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구축
등 시민이 체감하고 인구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
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 예산확보에 만전을
기해야 할 것임.